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상환(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광진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0. 12.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덕동 방면에서 계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차선을 정확하게 지켜 사고



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선 피해자 C(남, 8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이륜자동차를 추월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9세)으로 하여금 2024. 10. 19. 19:18경 안동시 양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제뇌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3장,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_____